

서울고등법원 2022. 10. 7 선고 2022나2012778 판결 [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천우 담당변호사 김영민

피고, 항소인 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르네상스 담당변호사 엄승하

변 론 종 결 2022. 7. 22.

판 결 선 고 2022. 10. 7.

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2. 10. 선고 2021가합528044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1,478,150,914원 및 그중 275,759,000원에 대하여는 2020. 12. 31.부터, 368,700,260원에 대하여는 2021. 3. 30.부터 각 2021. 5. 17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, 373,290,304원에 대하여는 2021. 6. 30.부터, 380,401,350원에 대하여는 2021. 9. 30.부터 각 2021. 11. 3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

값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, 40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21. 5. 18.부터, 40,000,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값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추가 판단 부분

피고는,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이 사건 주식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데, 원고가 주권 교부 등을 포함하는 이 사건 주식 인도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, 피고에게 매매대금 지급의무에 대한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,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,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(대법원 2001. 7. 10. 선고 2001다3764 판결 등 참조). 또한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채무에 관한 이행제공을

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 정도는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1. 4. 28. 선고 2010다94953 판결 등 참조).

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0. 12. 30., 2021. 7. 5. 및 2021. 10. 1.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이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4회에 걸쳐 이 사건 주식 인도의무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데, 피고는 위 내용증명우편을 송달받은 이후 매매대금 지급의사를 밝히면서도 각 변제기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(갑 제10호증, 특히 피고는 제2회 변제기 이후 원고에게 제3회 변제기 도래 전 제1, 2회 매매대금을 마무리하고 제3회 매매대금을 일정에 맞게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),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이 사건 주식 인도의무를 4회에 걸쳐 이행하도록 정하였는데, 이와 같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내용이나 성격, 원고의 여러 차례 이행최고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제1회 매매대금 지급의무조차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이행제공의 정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최고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 인도의무에 대한 적법한 이행제공을 마쳤다고 봄이 상당하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정준영, 판사 민달기, 판사 김용민